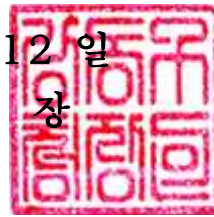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12 일
강 동 구 청 장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1. 융자규모 : 30억원

2.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3.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나.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금 리 : 연1.5%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2%의 우대금리 적용)

※ 2021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0,700원 / 월급 2,236,300원

라.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운전자금 -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4.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 지방세 · 과태료 체납업체 (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붙임 참조)

5. 융자신청서류

필수제출 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3년 재무제표 (법인사업자 해당시 제출) · 사전상담 확인서 1부	·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생활임금 준수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일 전월분) · 산업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 지역사회기여 증빙서류 사본 (최근5년 기부내역, 자치단체장 이상 표창 등)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업체에 한하여 융자 가능

- 부 동 산: 우리은행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계 사전상담 필수 (☎ 471-1305 내선321)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 사전상담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6.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11. 30.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연중 접수하되, 융자는 매월 1회 실행함

나. 접수방법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방문접수

※ 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천호동, 오복빌딩)

다. 문 의 처 : 02-3425-8729 (노동권익센터)

7. 사후정산

가. 융자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현황정산서 제출

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붙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지원제한업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강동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56212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1	골프장운영업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1	육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중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중	담배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등